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688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6년 6월 16일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4조제3항은 ‘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 지원 사업’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이나 안 제4조에 따른 전통시장 등 지정 상권의 상인조직에 대한 직접 지원 사업과는 성격이 상이하고, 사업의 내용 및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4조의2를 신설함.
- 제4조의2 신설에 따라 지원대상 예외 규정은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안 제12조 후단을 삭제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을 위한 상권 조사·발굴, 컨설팅, 상인조직화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의2).
- 지원대상의 예외 규정을 삭제함(안 제12조 후단 삭제).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하고,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)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상권 조사·발굴, 컨설팅, 상인조직화, 구역설정 검토·조정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안 제12조 후단을 삭제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4조(지원사업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4조(지원사업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 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 상권 구획 설정에 필요한 사 업을 지원할 수 있다. <u><신설></u>	제4조(지원사업) ①·② (개정안 과 같음) <u><삭제></u> 제4조의2(골목형상점가 지정 촉 진)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상권 조사·발굴, 컨설팅, 상인조직화, 구역설 정 검토·조정 및 행정절차 지 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제12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 른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에 한정한다. <u><후단 신설></u>	제12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. <u>다만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원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다.</u>	제12조(지원대상) ----- ----- -----. <u><후단 삭제></u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)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한 상권 조사·발굴, 컨설팅, 상인조직화, 구역설정 검토·조정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제15조를 제16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2(골목형상점가 지정 촉진)</u> <u>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위</u> <u>한 상권 조사·발굴, 컨설팅, 상인</u> <u>조직화, 구역설정 검토·조정 및 행</u> <u>정절차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</u> <u>진할 수 있다.</u>
<u>제15조(시행규칙)</u>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	<u>제16조(시행규칙)</u> (현행 제15조와 같음)